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97
----------	------

발의연월일 : 2025년 5월 일

발 의 자 : 임희도 의원

1. 제안이유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ombudsman’에서 추진 중인 규제애로 개선 과제 반영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고, 주요 행사 홍보를 위한 현수기 수수료를 기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여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나. 현수기(1개) 수수료 5,000원 별도 분리·신설(안 별표 3)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이의신청 등) ①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별표 3의 타목에 현수기(1개) 수수료 “5,000원”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생략) <u><신설></u></p>	<p>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현행 제1항과 같음) <u>제13조의2(이의신청 등) ①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을 처리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u></p>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현 행		개 정 안	
광고물등	수수료	광고물등	수수료
(생 략)		(생 략)	
타. 현수막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2)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신 설>		3) 현수기(1개)	5,000원
(생 략)		(생 략)	